

우송IT교육센터운영규정

제 정 2002. 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우송IT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목적) 교육센터는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내 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
2.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형 전문가 양성
3. 교육생들의 요구 및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교육 실시
4. 국가사회의 정보기술수준 향상에 기여
5. 사이버대학으로서의 우송대학교 이미지 제고

제3조 (소장) ①교육센터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학교법인 우송학원내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교직원) 교육센터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소장의 명을 받아 교학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교육센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 (학습기간) 교육센터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제8조 (학습일수) 교육센터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지원자격) 교육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우송대학교 및 학교법인 우송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산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일반인 및 타기관 위탁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선발방법) 교육센터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과정 등) ①교육센터의 설치과정, 학습인원 및 학습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 (학습비) ①교육센터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학습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강사) 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좌운명을 위한 강사진과 운영요원을 임시로 고용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교육센터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년도) 교육센터의 회계년도는 우송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6조 (예산편성) 소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수입원) 교육센터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대학 보조금
3. 기타 수입

제18조 (회계집행) 교육센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육센터에서 관장하며,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회계사무 등은 법인정관 및 대학의 재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